

2026년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

우수 중소·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“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
산업통상부장관

1 제도개요

□ 목적

-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·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·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
- ※ “혁신제품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구매면책, 시범구매,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

□ 주요내용

- (신규지정)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*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(또는 단독)R&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*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(R&D) 사업
- (추가등록)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(모델)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

추진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
- 재경부 훈령 제587호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
- 산업부 고시 “혁신제품 지정지침” 제2023-139호

□ (신청 자격)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- ① 국가연구개발사업(산업부)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
- ② 에너지협의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*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

* ②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은 금회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을 받고 시스템(www.techmarket.kr)을 통해 신청한 제품에 한함

- ③ 「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」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

□ (우대사항) 아래와 같은 경우,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

-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,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
-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*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([별지3]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)

* 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-139호 제22조 제2항」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□ (신규 지정 추진 절차) 공공성 · 혁신성 평가를 통해 신규지정

- ① (서류 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,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
- ② (공공성 평가위원회)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, 필요성 등을 평가

<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>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 기준
공공 적합성	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	▪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,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·제품인지 여부
	공공구매의 필요성	▪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
	수요기관 구매 적합성	▪ 해당제품·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
개발 완성 수준	TRL	▪ 기술완성수준 판단, 평가기관 검증 여부
	안전성	▪ 현장 적용시 안전,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
	규제	▪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

* 개별 항목에 위원 2/3 이상이 '적합' 의견을 제출, 전체 항목이 '적합'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

③ (혁신성 평가위원회)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*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

* 평가방법은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

- 「혁신제품 지정지침」 제12조에 의거, 평가위원회의 **종합평가점수* 75점 이상인 경우**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
*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
<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>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 기준
혁신 적합성 (50점)	제품의 신규성(20점)	▪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
	제품의 탁월성(20점)	▪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 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
	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(10점)	▪ 기술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·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,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
시장성 (50점)	시장규모(25점)	▪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
	파급성(25점)	▪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

④ (현장조사)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

*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

⑤ (심의예정공고) 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→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전 상정

⑥ (지정 최종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,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

*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

⑦ (지정 및 인증서 발급)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,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

□ 신규지정 일정(안)

구분	주체	세부내용	일정
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	신청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■ 신청 서류 접수(유형별 접수처 상이) 	~3.27
↓			
②서류검토	평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격요건 부합여부, 서류 적정성 등 검토 	3월
↓			
③공공성 평가	평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평가 	4월
↓			
③혁신성 평가 (필요시 현장 조사)	평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	4월
↓			
⑤조달적합성 검토	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품 규격·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	5월
↓			
⑥심의예정공고	산업통상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(20일) 	5월
↓			
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(공공수요발굴위원회)	재정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·의결 	6월
↓			
⑧최종지정 및 등록	산업통상부 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(온라인) ■ 혁신장터 등록 	6월

3

추가등록 신청

- (신청대상) 지정기간 내*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, 성능 (핵심 성능 外)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

*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

- (제출서류) 최초 지정 자격에 따라 접수·문의처 상이

필수	추가등록신청서 * [별첨] 양식 활용		
붙임1	추가등록 신청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시험성적서 등	붙임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
붙임2	추가등록 제품 규격서 *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	붙임5	사업자등록증 사본
붙임3	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 * 인증 허가 획득, 신고 및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	붙임6	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* [별첨] 양식 활용 * 한글파일로 제출

* 상기 목록 이외에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평가 제외

**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규격 일체는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

- 추가등록 절차 및 일정(안)

구분	주체	세부내용	일정
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	신청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■ 신청 서류 접수(유형별 접수처 상이) 	~3.27
↓			
②서류검토	평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격요건 부합여부, 서류 적정성 등 검토 	3월
↓			
③추가등록 평가 (필요시 현장 조사)	평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등록 규격의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 	4월
↓			
④조달적합성 검토	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품 규격·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	5월
↓			
⑤조달정책심의위원회 (공공수요발굴위원회)	재정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·의결 	6월
↓			
⑥최종지정 및 등록	산업통상부 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추가 규격 반영된 인증서 발급(온라인) ■ 혁신장터 등록 	6월

4

신청기간 및 방법(신규지정, 추가등록 공통)

□ (공고·접수) '26. 2. 26.(목) ~ '26. 3. 27.(금), 18:00까지

□ (신청방법) 제품등록* 후, 신청 서류 구비하여 신청(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)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신청자격(최초지정자격)	담당기관명	신청방법
① 산업부 R&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	inno@kiat.or.kr 이메일 제출
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업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	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	www.techmarket.kr 시스템 제출 biz-etm@kepco.co.kr 이메일 제출 ※ 시스템, 이메일 함께 제출 (사유 : 고도화 시스템 초기 적용단계에 따른 제출 오류 방지)

*

5

문의처

기관명	문의처	비고
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	044-203-4507	제도 문의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	02-6009-3614 inno@kiat.or.kr	운영 절차,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- 산업부 R&D, 차세대세계일류상품
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	061-345-7724 061-345-7726 biz-etm@kepco.co.kr	운영 절차,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- e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자체R&D 제품 *지식재산권 확보 및 직접생산 필수
한국도로공사	054-811-2456	중소기업기술마켓 시스템 문의

붙임 신규지정 제출 서류 목록

□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 제출

번호	항목	구분	관련	예시/참고사항
①	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서식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-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/식별번호 발급 필수
②	혁신제품 설명서	필수	서식2	-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(보통/완료 이상),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(해당시)
③	약정서	해당시	서식3	- 특허 공동 등록시
④	기술·성능 비교표	해당시	서식4	- 기 지정된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(세부품명번호 동일)으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경우 필수
⑤	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	필수	서식7	- 한글파일로 제출
⑥	자기점검표	필수	별지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
⑦	제품 규격서	필수	별지2	- 한글파일로 제출
⑧	혁신제품 추천서	해당시	별지3	
⑨	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	해당시	-	- 신청자격② 신청 시 제출 필수
⑩	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-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(별지4) 및 해당 증빙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별지4	- 인증·허가의 획득, 신고 · 기술인증 예시 : NEP 등 · 품질인증 예시 : KS인증, K마크, 환경표지인증 등 - 검사의 통과 자료 등 - OEM**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
⑪	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특허등록증(제출 시, 특허원부까지 제출 필수) -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- 공공/민간 수요 조사서 등(해당시)
⑫	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-	-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· 계산서, MOU, 구매계약서 등 - 직접제조의 경우,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·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, 작업공정도,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

* 상기 서류는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** 제조 형태 관련 : 신청자격②(기술마켓 등록제품), 신청자격③(차세대세계일류상품),의 경우 '직접생산'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